

[동업관계분쟁] 투자금 사용목적 한정 계약 BUT 투자금 임의사용 - **횡령죄: 창원지방법**

원 2019. 1. 10. 선고 2018노2319 판결



#### 투자계약서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지급받되, C의 사업 운영을 위한 원료 구입 및 운영자금으로만 투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사적인 사용은 할 수 없다.
- 수익배분은 C의 월 매출액(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매출금액의 10%를, 월 마감 후 익월 15일한 지급한다.

-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2010. 12. 31. 체결한 투자계약의 내용을 인정 승계 하되, 본 계약이 우선한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각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C'의 전체 지분 중 각 1/3을 지급키로 하되 법인 전환 시에도 동일하다.
- 피고인은 투자금액 전부를 본 사업 운영을 위한 원료구입 및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사적인 용도로의 사용은 할 수 없다.
- C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피고인, 피해자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어느 일방의 사정에 의거 사업수익이 미발생된 기간에 대한 배분이 필요할 경우에도 피고인, 피해자들 동일 금액으로 지급한다.
- 원료구입비 및 매출금액, 도로부지 편입보상비 등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자금의 입출금은 피해자들의 관리 하에 I은행 J 계좌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호 인정치 아니한 다른 계좌의 사용 또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대로 회사 자금의 출금 및 재산에 대한 처분이 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인정하여

본 계약서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C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고, 2011. 10. 피해자 G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 및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OTP카드를 넘겨주었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횡령기간 동안 4차례 걸쳐 다른 카드를 이용하였다) C의 자금을 사용하였다(278, 523, 579쪽).

5) 피고인은 C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C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C의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 임의로 C의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522, 547, 587,

## 법원의 판단

### (1) 업무상 횡령죄 인정

(2)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첨부: 창원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2319 판결

동업법무, 동업분쟁, 조합청산, 기업법무,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